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가단5096320 판결 [(사전)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변론 종결 2020. 4. 28.

판결 선고 2020. 6.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4. 26.까지는, 피고 C는

55,215,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5. 5.까지는, 피고 D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4. 26.까지는, 피고 E는 42,558,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5. 5.까지는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각 연 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F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5개 사업체 연합으로 이루어진 회사로, G은 위 사업체 중 하나인 H본부의 대표이고, I은 위 본부의 동작구A 1지점의 지점장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FC(보험설계사) 약정에 따른 수수료 반환 채무의 지급을 보증(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한 채무만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표 기재와 같은 각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하고,전부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피고들의 서명은 피고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제7조에 의하면,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제1항). 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과 아래 각 호의 비용을 갚아야 합니다(제2항). 제2항의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체일수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일자	보험계약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원)	보험기간
1	2018. 1. 11.	B	35,000,000	2018. 1. 11. ~ 2020. 1. 10.
2	2018. 2. 5.	C	75,000,000	2018. 2. 5. ~ 2020. 2. 4.
3	2018. 3. 8.	D	20,000,000	2018. 3. 8. ~ 2020. 3. 7.
4	2018. 4. 10.	E	65,000,000	2018. 4. 10. ~ 2020. 4. 9.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9. 3. 27. 이 사건 제1보험에 따라 35,000,000원을, 이 사건 제3보험에 따라 20,000,000원을, 2019. 4. 5. 이 사건 제2보험에 따라 55,215,134원을, 이 사건 제4보험에 따라 42,558,824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소외 회사 간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수료 반환채권을 대신하여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피고들과 소외 회사 간에 위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위촉계약의 체결 여부

1) 피고들이 직접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자격시험을 보았고, I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으며, 설계사 등록명의(이하 '코드'라 한다)를 부여하는 등 소외 회사와 직접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2019. 9. 27.자, 2020. 2. 18.자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 피고들이 I 에게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제공하였고, 소외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사실, 서울 도봉구 J 외 1필지 K건물 제4층 L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대전 대덕구 M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C, D, 각근저당권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회사가 2018. 1.경부터 피고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직접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로 위촉계약서가 중요한데, 2020. 2.18.자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상의 위촉계약서(이하 '2020. 2. 18.자 위촉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 B는 자필서명이 없고, 나머지 피고들은 자필서명이 있으나, 위 자필서명이 위 피고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피고들의 위촉계약서라며 제출한 피고들 별 위촉계약서(갑 제8호증)는 2020. 2. 18.자 위촉계약서와는 형식에 차이가 있고, 피고들 별로 자필서명 여부도 달라 양자 모두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 B는 2018. 1. 11., 피고 C는 2018. 2. 5., 피고 D은 2018. 3. 8., 피고 E는 2018. 4. 10. 소외 회사에 각 입사한 것으로 전산등록 되어 있는데, 이후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교육을 받았거나 보험설계사로서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 B, C, D이 소외 회사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담보로 제공된부동산의 소유자들은 N, O으로 위 피고들이 위촉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P 명의의 계좌(Q은행(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바로 송금하였다.

⑤ 피고 B는 2018. 11.경부터 I 이 운영하던 보험판매대리점에 월 250만 원을 지급받고 출근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소외 회사의 입사일인 2018. 1. 11.과는 차이가 있고, 청약서를 출력하거나 보험관련 서류 작업만을 하여 소외 회사를 위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대리에 의해 위촉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I 에게 위촉계약을 체결할 것을 사전에 동의 혹은 승낙하였으므로, I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촉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I 에게 소외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 혹은 승낙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B는 R를 통하여, 피고 E는 피고 B를 통하여 '보험설계사 시험을 봐서 코드만 만들어 주면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합격한 후 I 에게 코드를 빌려주고 매월 5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② 피고들이 I으로부터 위촉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을 듣거나 서류를 제공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된 거액의 돈을 반환하고 50만 원만을 지급받으면서, 계약의 내용, 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I 에게 위촉계약의 체결을 승낙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들은 I 에게 코드 사용을 허락하였음은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코드 사용이 위촉계약 체결의 승낙이라고 주장하나, 코드를 사용하여 경유계약¹⁾을 체결할 수도 있고, I은 지점장이지만 보험코드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코드 사용의 허락이 위촉계약 체결의 승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상법 제24조에 따라 위촉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I 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위촉계약 체결에 대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상의 명의대여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I 에게 코드

사용을 허락한 것 외에 피고들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보험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법 제24조의 책임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본 사안은 1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고, 피고들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참조),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지는 책임인데, 소외 회사가 피고들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들 간에 위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예지

1)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을 다른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는 것